

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일반계약직(휴직대체) 공개채용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 공개

화성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(모집공고) 제5항에 따라 「2026년 제2회 일반계약직(휴직대체) 공개채용」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을 공개합니다.

□ 채용전형별 진행일정

| 공고 | 원서접수 | 1차 전형 | | 2차 전형 | 최종합격자 발표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서류전형 | 결과발표 | 면접전형 | |
| '26.05.11. | '26.05.11. ~ '26.05.22. | '26.05.27. | '26.05.29. | '26.06.04. | '26.06.11. |

□ 전형별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

(단위 : 명, 점)

| 채용직렬 | 채용직급 | 채용 인원 | 접수 인원 | 경쟁률 | 서류전형 | | 면접전형 | | 최종합격 | 예비합격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 | 합격인원 | 합격선 | 합격인원 | 합격선 | | |
| 건축 | 계약 라급 | 1 | 3 | 3.0 : 1 | 1 | 44.17 | 1 | 89.00 | 1 | - |
| 행정 | 계약 마급 | 4 | 16 | 4.0 : 1 | 9 | 12.33 | 4 | 90.00 | 4 | - |

※ 서류전형 합격선은 일반계약직 자격요건 상 관련자격을 보유하였을 경우 **적격** 판정

□ 전형별 채용절차

○ 1차(서류)전형

- 관련분야 경력, 전공, 자격증, 직급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
-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 · 서류 전형을 통해,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

○ 2차(면접)전형

-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, 용모·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 평가
-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“보통(70점)” 이상인자 선발
(※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“미흡” 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)

○ 가산점 부여

- 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: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(30%이내)의 경우만 적용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% 또는 10%씩 가산
 나. 우수자원봉사자 :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4항 및 [별표6] 나호의 기준에
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 부여(※단,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부여)

| 구 분 | 자 격 기 준 | 배 점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금 장 |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0시간 이상인 자 | 5 |
| 은 장 |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200시간 이상인 자 | 4 |
| 동 장 |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 | 3 |
| 해바라기 |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시간 이상인 자 | 2 |
| 기 타 | 이하 봉사활동 | 1 |

○ 최종합격자 결정

- 경력공채(계약직) : 서류전형 50% 및 면접전형 50%를 합산한 총점의
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
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

「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」 제14조

-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.
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.
1.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 2. 서류전형(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전형) 성적우수자
 3.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
 4. 자격증 소지자

○ 예비합격자 결정

-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자순으로
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, 예비합격자는 직렬별 최대 3명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
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-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(유효기간 공고일로부터 6개월)